

투자 위험 등급
4등급 [보통 위험]

1	2	3	4	5	6
매우 높은 위험	높은 위험	다소 높은 위험	보통 위험	낮은 위험	매우 낮은 위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4등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펀드의 위험 등급은 운용실적, 시장 상황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투자설명서

이 투자설명서는 트러스트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UH) [채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러스트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UH) [채권]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 트러스트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UH) [채권]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트러스트자산운용(주)
3. 판 매 회 사 : 각 판매회사 본·지점
(판매회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작 성 기 준 일 : 2025. 8. 19.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25. 8. 26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모집규모를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로서 모집 개시일(2016년 7월 30일) 이후 계속 모집할 수 있음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및 각 판매회사 영업점

※ 이 투자신탁은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신고서의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기재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3. 모집예정금액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5. 인수에 관한 사항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4. 집합투자업자
5. 운용전문인력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14.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2. 연도별 설정현황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5.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기재사항

[붙임]용어풀이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간이 투자설명서의 경우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과거의 투자실적은 참고 자료로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 **원본손실위험, 투기등급자산에의 투자 등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투자위험에 대하여는 증권(일괄)신고서, 투자설명서 또는 간이투자설명서 본문의 투자위험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으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 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9. 이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은 이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의 운용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 7. 31. 현재, 단위:개,억원 %)										
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해외채권형)				운용경력 년수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운용역		운용사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1 년	최근 2 년	
	양진모	1973 년	책임 운용인력 (상무)	4	2,349	6.84	8.04	6.84	8.04	15년 2개월
	‘책임운용전문인력’은 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의사결정 및 운용결과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운용전문인력을 말하며, “부책임운용전문인력”은 책임운용전문인력이 아닌 자로서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및 운용전략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산에 대한 운용권한을 가진 운용전문인력을 말합니다. (주 2)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 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등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 3)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이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주 4)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주 5)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투자자 유의사항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보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시어 투자설명서의 교부를 요청하시면 귀하의 집합투자증권 매입 이전까지 교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투자설명서는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까지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집합투자증권의 투자위험등급을 확인하시고, 귀하의 투자 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는 반드시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또한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 년(법 시행령 제 81 조제 3 항제 1 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 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 억원 미만(소규모펀드)인 경우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임의해지 될 수 있으니, 투자 시 소규모펀드 여부를 확인 하시기 바라며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는 금융투자협회, 판매회사,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요투자 위험	구 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원본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주요 운용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산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에의 투자)은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매입 방법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 17 시 경과후: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매입					환매 방법	· 17 시 이전: 3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7 영업일에 지급			

환매 수수료	해당사항 없음		· 17 시 경과후 : 4 영업일 기준가격으로 8 영업 일에 지급
기준가	산정방법	- 당일 기준가격 = (전일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 - 부채총액) /전일 집합투자기구 총좌수 -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	
	공시장소	판매회사 본·영업점,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 판매회사 · 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dis.kofia.or.kr)에 게시합니다.	
과세	구 분	과세의 주요내용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기구 단계에서는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거주자와 일반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 이익에 대해서는 15.4%(지방소득 세 포함) 세율로 원천징수됩니다. 단,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 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집합투자업자	트러스트자산운용(주) (대표번호: 02-6308-0500 / 인터넷 홈페이지 : www.trustonasset.com)		
모집기간	효력발생 이후 계속 모집 가능	모집, 매출 총액	모집규모를 정하지 않고 계속 모집할 수 있음
효력발생일	2025. 8. 26	존속 기간	정해진 신탁계약 기간은 없음
판매회사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한국금융투자협회(dis.kofia.or.kr) 인터넷홈페이지 참고		
참조	집합투자업자의 사업목적, 요약 재무정보에 관한 사항은 투자설명서 제 4 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41 페이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 단계로 구분되며, 집합투자기구 종류의 대표적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 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 은 약 2 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 (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 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 점입니다. 따라서 2 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판매 경로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 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 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 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라 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 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 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 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 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 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판 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	----------	--

[집합투자기구 공시 정보 안내]

- 증권신고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 투자설명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 한국금융투자협회(kofia.or.kr),
집합투자업자 (www.trustonasset.com) 및 판매회사 홈페이지
- 정기보고서(영업보고서, 결산서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및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 자산운용보고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trustonasset.com)
- 수시공시: 한국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시스템(dis.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 (www. trustonasset.com)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UH) [채권]	BF67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BF673
수수료선취-온라인(Ae)	BF6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BF6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F6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BF6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BF67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F6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F6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F6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F6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F6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BF6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U123

2.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가. 형태별 종류 : 투자신탁

나. 운용자산별 종류 : 증권(채권형)

다. 개방형·폐쇄형 구분 :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라. 추가형·단위형 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

마. 특수형태 : 종류형(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자투자신탁으로 구성)

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해당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으며, 자세한 투자대상은 제 2 부의 “투자대상”과 “투자전략”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모집예정금액 :

추가형 집합투자기구이므로 모집규모를 따로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주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가모집(판매)은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 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의 설정이 취소되거나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 예정금액 및 모집(판매) 예정기간은 예정보다 줄거나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모집의 내용 및 절차

가. 모집기간 :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나. 모집장소 : 판매회사 본·지점

[모집장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모집 또는 배정절차 및 방법 : 판매회사 영업일에 판매회사 창구를 통하여 모집합니다.

※ 모집(매입) 방법 및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2부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인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상장 및 매매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제2부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기구 명칭	펀드코드
트러스톤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투자신탁(UH) [채권]	BF672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BF673
수수료선취-온라인(Ae)	BF67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BF675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F67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BF67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BF679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F6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F681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F682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F68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F684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BF685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BU123

2.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기준일	변경사항
2016.7.30.	- 일괄신고서 효력발생
2017.7.27.	- Cp2-E 클래스 신설

3.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기간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 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신탁계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투자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법령 또는 신탁계약 상 일정한 경우에는 강제로 해산(해지)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산(해지)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5부의 내용 중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집합투자업자

회 사 명	트러스톤자산운용주식회사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성동구 뚝섬로 1 길 10(성수동 1 가) (☎ 6308-0500)

※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회사)에 자세한 사항은 제 4 부 내용 중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운용전문인력

가. 운용전문인력

(2025. 7. 31. / 단위:억원)

성명	출생 년도	직위	운용경력 년수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양진모	1973년	책임 운용역 (상무)	15년 2개월	학력
				성균관대학교 경제학 학사
				연세대학교 경제학 석사
				경력
				00.02 ~ 10.06 SK증권 투자전략팀
				10.06 ~ 13.10 골드만삭스자산운용 Investment Management Division
				13.11 ~ 14.09 IBK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14.10 ~ 현재 트러스트자산운용 채권운용본부
				자격증
				투자자산운용사

※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채권운용본부에서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의사결정 등에 주도적·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 ‘운용경력년수’는 해당 운용전문인력이 과거 집합투자기구를 운용한 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입니다.

나. 운용중인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2025. 7. 31. 현재, 단위:개,억원 %)

성명	전체 운용현황		성과보수가 약정된 집합투자기구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 (해외채권형)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집합투자 기구 수	운용규모 (수탁고)	운용역		운용사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1년	최근 2년
양진모	4	2,349	-	-	6.84	8.04	6.84	8.04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집합투자업자가 분류한 동일 유형 집합투자기구의 평균운용성과를 의미하며, 해당 운용전문인력의 평균운용성과는 해당 회사 근무기간 중 운용한 성과를 의미합니다.

※ 동종집합투자기구 연평균 수익률은 당사 공모펀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운용펀드 기준으로 보수차감 전 수익률입니다.

※ 상기의 운용전문인력의 최근 과거 3년 이내에 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은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 트러스트코리아외화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 트러스트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UH) [채권]의 책임운용전문인력과 같음

다.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해당사항 없음

※ 최근 3년 동안의 변경 내역을 기재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

- 트러스트코리아외화채권증권모투자신탁 [채권]

: 트러스트코리아외화채권증권자투자신탁(UH) [채권]의 운용전문인력 최근 변경 내역과 같음

6.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가.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 : 투자신탁, 증권(채권형),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모자형

트러스톤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트러스톤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자투자신탁(UH)[채권]

나. 종류형 구조

이 투자신탁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종류형 투자신탁으로서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종류형 수익증권은 아래와 같습니다.

종 류	펀드코드	가입자격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BF673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선취-온라인(Ae)	BF674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BF675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BF677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BF678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BF679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BF680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BF681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BF682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BF683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BF68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BF685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	BU12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

이 집합투자기구는 종류형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집합투자기구의 종류는 판매수수료 부과방식-판매경로-기타 펀드특성에 따라 3단계로 구분되며, 본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각 종류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종류(Class)		집합투자기구의 특징
판매 수수료	수수료 선취(A)	집합투자증권 매입시점에 판매수수료가 일시 징구되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미징구형(C)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미징구형(C)보다 높은 총비용을 지불 하게 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수수료 미징구(C)	집합투자증권 매입 또는 환매시점에 일시 징구되는 판매수수료는 없는 반면 판매보수가 판매수수료선취형(A), 판매수수료후취형(B) 또는 판매수수료선후취형(AB)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므로 총비용이 판매수수료선취형(A)과 일치하는 시점은 약 2년이 경과되는 시점입니다. 따라서 2년 이전에 환매할 경우 판매수수료선취형(A)보다 낮은 총비용을 지불 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온라인 (e)	판매회사의 온라인전용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오프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저렴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판매 경로	오프라인	오프라인전용(판매회사 창구)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로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보다 판매수수료 및 판매보수가 높은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 클래스(S-T 및 S-P 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를 징구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다만, 판매회사로부터 별도의 투자권유 및 상담서비스는 제공되지 않습니다.
기타	개인연금 (P)	소득세법 제 20 조의 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 40 조의 2 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퇴직연금 (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IRP)를 통해 매입이 가능한 집합투자기구입니다.
	고액 (I)	법시행령 제 10 조제 2 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 10 조제 3 항제 12 호·제 13 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 억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랩 (W)	Wrap Account(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를 통해 판매되는 집합투자기구입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관한 사항]

모투자신탁명		주요 투자대상 및 전략
트러스트론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 모투자신탁 [채권]	주요투자대상	한국의 공사, 은행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글로벌 신용등급 BBB- 이상)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 투자합니다.
	투자목적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비교지수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참조 지수(Barcleys Global Aggregate Index(KRW Unhedged) × 95% + Call 금리×5%)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주요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① 외화표시 채권 투자로 금리는 높이면서, 상대적인 낮은 듀레이션과 중기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 구성합니다. ② 후순위채권과 고금리 통화채권에 투자합니다. - 펀더멘털 및 상대가치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외화표시 후순위채 발굴 - 한국보다 높은 금리 수준의 국가이면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안정이 기대되는 국가에서 한국의 은행, 기업 등이 발행한 고금리 통화 채권에 투자 ③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상기 모투자신탁의 등록신청서는 2016년 7월 30일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었으며 신탁계약서 등 관련 내용은 집합투자업자 홈페이지(www.trustonasset.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이 투자신탁은 주된 투자대상자산인 채권에 신탁재산 자산총액의 60% 이상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자본소득에 따른 수익을 추구합니다.

※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떠한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8.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 투자 대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모투자신탁의 수익증권	90%이상	▶ 트러스트론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2)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법 시행령 제 268 조제 4 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3) 유동성자산	10%이하	▶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단, 40%이하 범위 내에서 10% 초과 가능)	▶ 금융기관예치 (만기 1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주)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0]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 대상]

- 트러스톤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 모투자신탁[채권]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 채권	60%이상 (단, 후순위 채권에의 투자는 30% 이하로 함)	▶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 사채권(신용평가등급 A-이상,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은 제외)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2) 자산유동화 증권	40%이하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3) 어음	40%이하	▶ 기업어음증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으로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신용평가등급 A2 이상) ▶ 양도성 예금증서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국제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BBB-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것 또는 이와 동일한 등급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부여 받은 법인이 발행한 것)
4) 파생상품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10%이하	▶ 법 제5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파생상품으로서 채권·통화나 채권·통화의 가격, 이자율,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5) 집합투자 증권	40%이하	▶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금전신탁계약에 의한 수익권이 표시된 수익증권) ▶ 법 제9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 상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
6) 환매조건부 매도	증권총액의 50% 이하	▶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수할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
7) 증권 대여 ^{주1)}	증권 총액의 50%이하	▶ 투자신탁재산이 보유하는 증권을 대여
8) 증권 차입 ^{주2)}	20%이하	▶ 채권, 자산유동화증권, 어음의 규정에 의한 투자증권의 차입
9)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	▶ 법 시행령 제26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

투자대상	투자비율	투자대상 조건
10) 유동성자산	-	▶ 단기대출 (30 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 금융기관예치(만기 1 년 이내인 상품) ▶ 환매조건부 매수 ▶ 상기에 준하는 외화표시 자산
12) 채권회수를 위한 주식취득	-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협의회가 의결한 채권조정에 따라 채권 및 어음 등의 채권회수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는 투자신탁 재산으로 지분증권인 주식, 주식관련사채권 등을 취득할 수 있음

가)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1)~3)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 다만, ④ 및 ⑤의 경우에는 투자비율 적용 예외 기간을 15일 이내로 함

- ①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로부터 1월간
- ②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③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④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1)~3)의 투자비율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나)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4)~9)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다) 투자대상자산의 신용평가등급이 위에서 정한 신용평가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 초하락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다만, 부도 등으로 3개월 이내에 해당 투자대상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 하여야 함

주 1) 투자대상별 투자비율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산출

주 2)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

가. 수익률 증진 :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차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 안정적 대차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 점의 대차 수수료 수익을 추구

나. 기타 효율적,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

주 3) 효율적 운용,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 환매 대응, 유동성 확대,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증권 차입을 진행할 수 있음

나. 투자제한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 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 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 83 조제 4 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제한]
- 트러스트론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

구분	내용
1) 이해관계인과의 거래	▶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의 방법으로 거래행위를 하는 행위. 단,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은 다음의 방법으로도 운용할 수 없다. -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 대출 - 환매조건부 매수 (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경우를 말한다)
2) 동일종목 투자	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 제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 포함)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봄. 나)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음 (1) 자산총액의 100%까지 투자 : 국채증권,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 (2)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 :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권 제외) 및 직접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기업어음증권 및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어음·양도성 예금증서 또는 지급을 보증한 채권·어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가목,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 경제협력개발기구에 가입되어 있는 국가나 투자자 보호 등을 고려하여 법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주택저당증권), 법 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금전을 대여하거나 예치·예탁하여 취득한 채권
3) 파생상품 투자	가) 파생상품의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나) 파생상품의 매매와 관련하여 기초자산 중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 포함)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다) 같은 거래상대방과의 장외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거래상대방 위험평가액이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라) 법시행령 제80 조 제5 항에서 정하는 적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행위
4) 집합투자증권 투자	가)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여 투자할 수 있는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나)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집합투자기구에 상당하는 외국사모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법 제279조제1항의 외국집합투자기구 포함)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20%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그 비율의 계산은 투자하는 날을 기준으로 함 라)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를 초과하여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할 수 있음
5)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 발행증권	▶ 법 시행령 제86조에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집합투자업자의 계열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취득하는 행위

다음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용을 적용하지 아니함.

(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로 불가피하게 위의 2),3),4)의 투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로 하며, 금융투자업규정 제4-54조의2 규

정에 대한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경우는 6개월까지(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3호의 경우 이를 따른다))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봄

- ①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투자대상자산의 가격 변동
 - ② 투자신탁의 일부해지
 - ③ 담보권의 실행 등 권리행사
 - ④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증권을 발행한 법인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 ⑤ 그 밖에 투자대상자산의 추가 취득 없이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
- (나) 2),3),4)-라)의 투자비용은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부터 1 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함.

9.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가.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전략

- (1) 트러스톤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에 90% 이상 투자합니다.
- (2) 이 투자신탁은 외국통화로 표시된 자산에 대한 환헤지를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환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성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 트러스톤 코리아 외화채권 증권모투자신탁[채권]의 투자전략

한국의 공사, 은행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외화표시 채권(글로벌 신용등급 BBB- 이상)에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면서, 한국 우량기업이 발행한 외화표시 후순위채와 고금리 통화 채권 등에도 분산 투자하여 추가 수익을 추구합니다.

- ① 외화표시 채권 투자로 금리는 높으면서, 상대적인 낮은 듀레이션과 중기채권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안정적인 수익 추구
- ② 후순위채권과 고금리 통화채권에 투자하여 알파 수익 추구
 - 펀더멘털 및 상대가치 분석을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외화표시 후순위채 발굴
 - 한국보다 높은 금리 수준의 국가이면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안정이 기대되는 국가에서 한국의 은행, 기업 등이 발행한 고금리 통화 채권에 투자

※ 비교지수 : 없음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지수를 참조 지수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참조지수 :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KRW Unhedged) x 95% + Call 금리 x 5%

(Barclays Global Aggregate Index : 바클레이즈 캐피탈(Barclays Capital)이 산출, 발표하는 발표하는 글로벌 채권으로 구성된 지수)

시장상황 및 투자전략의 변경 등에 따라 참조지수는 다른 지수나 수익률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참조지수는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판매회사 및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의 인터넷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위험관리 전략

이 투자신탁은 시장 지표의 모니터링과 분석을 바탕으로 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등 위험을 사전인식하고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 위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시장위험 : 시장상황에 따른 듀레이션 조정으로 시장 위험 관리
 - 신용위험 : 국공채, 통안채, 글로벌신용등급 BBB- 이상의 채권에 투자함으로써 신용위험 관리
 - 컴플라이언스 : 사전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가동하여 운용지시 전 제반 법규 및 지침의 위반 여부를 사전확인
- 또한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환율변동에 의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한 자산 가치 상승으로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하락(외화대비 원화 가치 상승)하는 경우, 투자원본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나. 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90% 이상을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채권)으로서 투자한 모투자신탁의 가격변동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10.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이 투자신탁은 원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며,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은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의 예금과 달리 실적에 따른 수익을 취득하므로 은행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에도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아래의 내용은 이 투자신탁 상품 투자 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투자신탁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 내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실적배당상품으로 은행 예금과 달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고,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투자에 따른 환율변동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환헤지 전략을 실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따라서 주로 외화표시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원화(KRW)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외화투자자산의 가치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원화와 투자대상국 통화간의 상대적 가치 변화로 인해 투자 시 수익을 얻지 못하거나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위험	과세당국에서 인식하는 투자에 따른 손익은 세금을 내야 하는 과세대상 자산에서 발생한 손익과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대상자산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비과세손익은 수익이 있더라도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손실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대상 자산에서는 수익이 발생하였으나 비과세 대상 자산에서 손실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펀드가 손실이 발생한 경우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세대상 자산의 예 : 해외투자 시 이익 및 환차손익, 채권투자 시 이자 수익, 선도환 및 선물환 등 환헤지에 따른 이익 등 *비과세 대상 자산의 예 : 국내상장주식 매매차익 등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투자신탁재산을 채권 및 파생상품 등에 투자함으로써 채권의 가격 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는 투자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 장외파생상품 거래 등에 있어서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 등에 따라 발행회사나 거래상대방의 신용등급 하락, 채무불이행, 부도발생 등으로 환매연기로 인한 기회비용 발생과 함께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자율 변동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투자하는 채권의 가격은 이자율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율이 하락하면 채권가격이 상승에 의한 자본이득이 발생하고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손실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손실 또는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생상품 투자위험	파생상품(선물)에의 투자는 작은 증거금으로 거액의 결제가 가능한 지렛대효과(레버리지 효과)로 인하여 기초자산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 비하여 높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에 따른 모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트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변경 위험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모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모자형 전환, 존속 등의 처리계획을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와 협의하여 정하게 되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

나. 특수위험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 등에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대상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정책 및 제도의 변화로 인해 자산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조세제도 변화 등의 정책적 변화로 인한 위험도 있습니다.
외국세법에 의한 과세에 따른 위험	이 투자신탁은 해외 채권에 투자할 수 있으며, 해외 유가증권에 투자할 경우 해당 유가증권이 거래되는 특정국가의 세법에 영향을 받습니다. 특정 외국의 세법에 의한 배당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고, 향후 특정 외국의 세법 변경으로 높은 세율이 적용될 경우 세후 배당소득, 세후 양도소득 등이 예상보다 감소하여 투자신탁 재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부도자산 등의 평가 위험	이 투자신탁이 보유한 자산 중, 해당 자산 발행사의 부도, 화의신청, 회사정리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절차 진행 등으로 인해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회수가 곤란하여 부도 채권 또는 부실자산으로 분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평가 위원회를 거쳐 자산 상각을 하게 되며, 이는 해당 자산의 가치가 하락하여 투자신탁의 손실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산상각에 따른 평가액은 계속 지속됨을 의미하진 않으며, 이 후 발행사의 회생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다시 상승할 수 있으며, 또는 발행사의 청산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치가 소멸될 수도 있습니다.
후순위채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후순위 채권(투자신탁재산을 그 발행인이 파산하는 때에 다른 채무를 우선 변제하고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채무를 상환한다는 조건이 있는 채권)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신탁재산의 발행인의 파산시 투자원본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대여위험	이 투자신탁에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대여할 경우, 중개회사 및 거래상대방의 시스템 및 운영오류나 거래상대방의 파산으로 인해 자산의 회수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신탁의 투자자산 매매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투자자는 기회비용 부담과 투자원금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권차입위험	이 투자신탁의 운용 전략에 따라 투자증권을 차입할 경우, 차입 자산을 공매도(short selling)하여 해당 자산의 반환 시점에 예상과 달리 그 자산의 가치가 급등하게 되면, 매도 시점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수함으로써 인해 그 차액(매도가-매수가)만큼 투자원금액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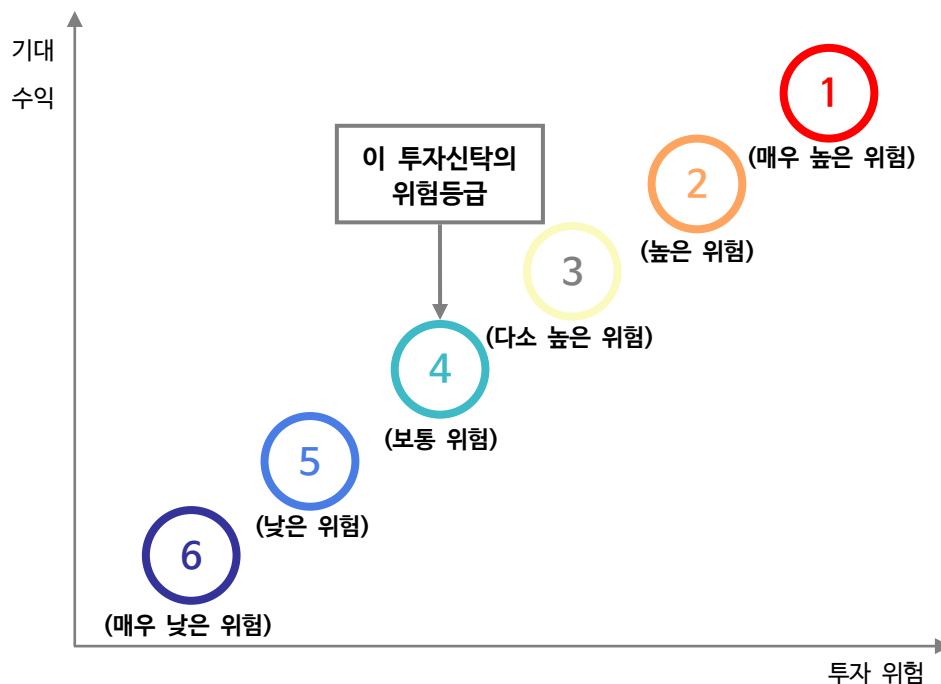
구분	투자위험의 주요내용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투자신탁재산에서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대상 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순자산가치 변동위험	환매청구일과 환매기준가격 적용일이 다르기 때문에 환매시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기준가격 적용일까지의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환매연기위험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거나 환매에 응하는 것이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증권의 환매가 연기될 수 있습니다.
투자신탁 규모변동에 따른 위험	투자신탁의 규모가 환매 등에 의해 일정 규모 이하로 작아지는 경우, 원활한 분산 투자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 해지의 위험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 50억원 미만인 경우 또는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등의 사유로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신탁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가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라.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 (97.5% VaR 모형 사용)	투자위험등급
19.19%	4 등급 (보통 위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60% 이상을 한국 기업에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증권집합투자기구(채권형)으로서 3년 수익률 변동성(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이 19.19%로 6등급 중 4등급에 해당되는 보통 위험 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보다 다소 높은 투자수익을 추구하면서 투자대상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 자산의 투자위험을 이해하고, 국내 채권형 펀드보다 높은 위험을 감내할 수 있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트러스트자산운용 집합투자기구 위험등급 분류기준〉

1) 설정된 후 3년 경과된 경우

위험등급	1 (고위험)	2	3	4	5	6 (저위험)
97.5% VaR	50%초과	50%이하	30%이하	20%이하	10%이하	1%이하

* 과거 3년 일간 수익률에서 2.5 퍼센타일에 해당하는 손실률의 절대값에 연환산 보정계수($\sqrt{250}$)를 곱해 산출

※ 수익률 변동성(VaR, Value at Risk)의 의미

VaR(Value at Risk)는 포트폴리오 손실 위험 측정을 위해 이용되는 위험 측정수단입니다. 상기 표상 VaR값 00%의 의미는 펀드의 과거 3년 동안 일간수익률을 고려 시 최대 00%의 손실(신뢰구간 97.5%)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위험등급	분류기준	상세설명
1등급	매우 높은위험	▶ 레버리지 등 수익구조가 특수하여 투자시 주의가 필요한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를 초과하는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2등급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3등급	다소 높은위험	▶ 고위험자산에 8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최대손실률이 20% 이하인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4등급	보통위험	▶ 고위험자산에 50% 미만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중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5등급	낮은위험	▶ 저위험자산에 최소 60% 이상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수익구조상 원금보존추구형 파생결합증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6등급	매우 낮은위험	▶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MMF) ▶ 단기 국공채 등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 기타 이와 유사한 위험수준을 갖는 집합투자기구

주 1) 위 분류기준은 당사의 내부기준으로 다른 집합투자업자의 위험등급 분류기준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주 2)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한 집합투자기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수익률 변동성(예 : 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일간 수익률의 최대 손실 예상액)을 기준으로 위험등급을 구분합니다. 따라서, 설정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실제 수익률 변동성 기준으로 위험등급 분류기준이 변경되면 위험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 3) 고위험자산 : 주식, 상품, REITs, 투기등급채권(BB+등급 이하), 파생상품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4) 중위험자산 : 채권(BBB-등급 이상), CP(A3등급 이상), 담보부 대출, 대출채권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5) 저위험자산 : 국공채, 지방채, 회사채(A-등급 이상), CP(A2-등급 이상), 현금성 자산 및 이와 유사한 수준의 위험을 갖는 자산

주 6) 해외자산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국내자산에 준하여 분류하되 환헤지 여부 및 투자국가에 따라 위험등급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 7) 수익률 변동성 측정이 곤란하거나 수익구조가 특수·복잡하여 수익률 변동성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 상기에 명시되지 않은 집합투자기구는 수익구조·투자자보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사에서 자체적으로 등급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11. 매입, 환매, 전환절차 및 기준가격 적용기준

가. 매입

1) 매입방법 및 절차, 매입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취득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매입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이 투자신탁의 매입 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 납입이 가능하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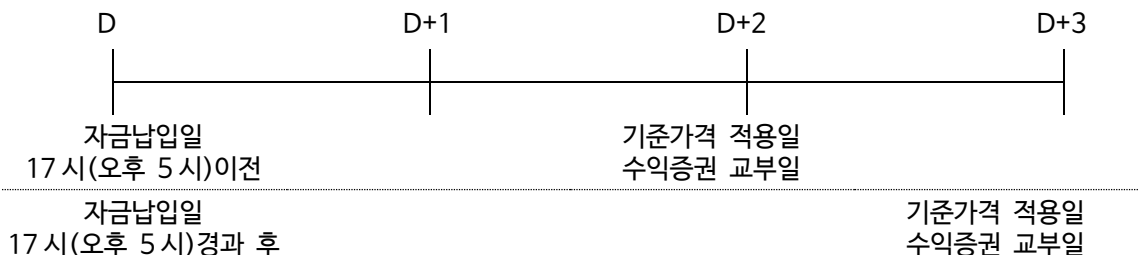
2) 종류별 매입자격

이 투자신탁의 가입 가능한 수익증권의 종류 및 매입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가입제한은 없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② 수수료선취-온라인(A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선취판매수수료가 징구되는 수익증권
 - ③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가입제한은 없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④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⑤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회사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 및 특정금전신탁
 - ⑥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법시행령 제10조제2항에서 규정한 금융기관 및 법시행령 제10조제3항 제12호·제13호에서 규정한 기금 및 법인, 집합투자기구, 최초 납입금액이 50억 이상인 법인
 - ⑦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후취판매수수료가 부과되는 수익증권에 가입하고자 하는 투자자
 - ⑧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⑨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⑩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자산운용사의 공동판매채널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모든 공모 S클래스(S-T 및 S-P클래스 포함)를 취급하고,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상품을 노출 및 배열하는 온라인판매시스템을 통하여 판매되는 것으로서 소득세법 제20조의3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으며, 다른 클래스[가입 자격(기관 및 고액거래자 등)에 제한이 있는 클래스 제외] 보다 판매보수가 낮고, 판매수수료가 징구되지 않는 수익증권
 - ⑪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 ⑫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퇴직연금 집합투자기구 및 퇴직연금보험
 - ⑬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한 퇴직연금사업자 및 개인퇴직계좌를 설정한 자 중 인터넷을 통하여 가입하는 투자자
- ※ 판매회사에 따라 최소투자규모 등 별도의 가입제한이 설정될 수 있습니다.

3)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 ① 17시[오후5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② 17시[오후5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4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 ③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주1) 수익증권 매입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이전까지만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달리 운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금을 납입한 당일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매수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나. 환매

1) 환매방법 및 절차, 환매신청 가능시간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시려면 판매회사의 영업점에서 영업시간 중에 환매청구를 하실 수 있으며 판매회사에서 온라인 환매가 가능한 경우, 온라인을 통한 환매청구도 가능합니다.

〈환매 가능 여부 및 환매수수료 부과 여부〉

중도환매 불가	중도환매 허용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	중도환매시 비용 발생하지 않음
-	-	○

2) 환매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및 환매대금 지급시기

- ① 17 시[오후 5 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3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7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 ② 17 시[오후 5 시] 경과 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4 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8 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주1) 수익증권 환매청구의 취소(정정)는 당일 17시[오후 5시] 이전까지 취소(정정) 가능합니다.

주2) 기준시점은 판매회사의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거래전표에 표시된 시간으로 구분 처리합니다.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가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한 경우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대금으로 환매에 응하지 않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익자가 환매를 청구한 날에 모투자신탁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 투자신탁이 보유 중인 현금 등으로 환매에 충분히 응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환매수수료

이 투자신탁은 환매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4) 환매연기

법령과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유로 인하여 환매일에 환매금액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연기할 수 있습니다. 환매가 연기된 경우 환매연기 사유 및 수익자총회 개최 등 향후 처리계획을 수익자 및 판매회사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환매연기사유

- ① 투자신탁재산의 매각이 불가능하여 사실상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② 수익자간의 형평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③ 환매를 청구받거나 요구받는 판매회사·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해산 등으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할 수 없는 경우
- ④ ①부터 ③에 준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환매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환매연기기간 중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발행 및 판매를 할 수 없습니다.

5) 환매제한

다음의 경우 수익자는 수익증권의 환매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자를 정하기 위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수익자명부에 기재된 수익자 또는 질권자를 그 권리를 행사할 수익자 또는 질권자로 보도록 한 경우로서 이 일정한 날의 3 영업일(17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4 영업일) 전일과 그 권리를 행사할 날까지의 사이에 환매청구를 한 경우
- ② 법령 또는 법령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환매가 제한되는 경우

6) 일부환매

- ① 투자신탁재산의 일부가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거나 수익자총회(환매연기총회)에서 일부환매를 결의하는 경우 환매연기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상자산에 대하여는 수익자가 보유하는 수익증권의 지분에 따라 환매에 응할 수 있습니다.
- ② ①에 따라 수익자총회에서 일부환매가 결정된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일부환매를 결정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환매연기의 원인이 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합니다.
- ③ ②에서 정한 바에 따라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을 정상자산으로부터 분리한 경우에는 환매연기사유에 해당하는 자산만으로 별도의 투자신탁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이 투자신탁 수익증권의 보유좌수에 따라 별도의 투자신탁의 수익권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 ④ 집합투자업자는 ③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정상자산으로 구성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속해서 발행·판매 및 환매할 수 있습니다.
- ⑤ 집합투자업자가 일부환매를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내용을 지체 없이 수익자, 신탁업자 및 판매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판매회사는 통지 받은 내용을 본·지점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12. 기준가격 산정기준 및 집합투자재산의 평가

가. 기준가격의 산정 및 공시

구분	내용
	당일의 공고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재무상태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기준가격 산정방법	기준가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 $\frac{\text{펀드의 순자산 총액}}{\text{총 좌 수}} \times 1,000$ 수익증권 매입 및 환매거래 시 기준이 되는 가격 실제 기준가 1좌=1원 1,000좌 기준=1,000원
	※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종류(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포함]은 매일 산정하며, 보수, 수수료의 차이로 인하여 클래스간 기준가격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게시합니다.

기준가격	집합투자업자(www.trustonasset.com) ·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 · 판매회사
공시장소	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판매회사 영업점에 공시 됩니다.

※ 공휴일, 국경일 등은 기준가격이 공시되지 않습니다.

나. 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투자신탁재산에 속하는 자산은 그 종류별로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대상자산	평가방법
상장주식	평가 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비상장주식	취득원가 또는 채권평가회사, 회계법인, 신용평가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장내파생상품	그 장내파생상품이 거래되는 파생상품시장 등에서 공표하는 가격
장외파생상품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 또는 그 장외파생상품 발행 또는 계산 회사가 제시하는 가격
상장채권	평가기준일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를 기준으로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대상채권 :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월간 계속하여 매월 10일 이상 증권시장에서 시세가 형성된 채무증권에 한정
비상장채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정보를 기초로 한 가격 상장채권 중 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채권을 포함
기업어음	2 이상의 채권평가회사가 제공하는 가격을 기초로 한 가격
집합투자증권	평가기준일에 공고된 기준가격. 다만, 상장된 집합투자증권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가

13.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이 투자신탁은 종류형투자신탁으로서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종류별로 수익증권이 발행되며, 종류별 보수 및 수수료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판매보수 또는 판매수수료와 관련하여 집합투자기구의 판매회사(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 받고 설명 받으셔야 합니다.

가.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수수료율	수수료 구분		
	선취판매수수료	후취판매수수료	환매수수료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납입금액의 0.24% 이내	없음	없음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납입금액의 0.12%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 (W)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 (I)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없음	3 년 이내 환매시 환매금액의 0.15% 이내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없음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Cp2-F)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나.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구분	지급비율(연간,%)									
	집합투자 업자보수	판매 회사 보수	신탁 회사 보수	일반 사무 관리 회사 보수	총 보수	기타 비용	총 보수 비용 (TER)	동종 유형 총 보수	합성 총보 수·비용 (모투자 신탁의 총 보수·비용 포함)	증권 거래 비용
수수료선취- 오프라인(A)	0.170	0.220	0.028	0.015	0.433	0.001	0.434	0.610	0.455	0.000
수수료선취- 온라인(Ae)	0.170	0.110	0.028	0.015	0.323	0.001	0.324	0.480	0.345	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C)	0.170	0.380	0.028	0.015	0.593	0.001	0.594	0.470	0.615	0.00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Ce)	0.170	0.190	0.028	0.015	0.403	0.001	0.404	0.550	0.425	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고액(I)	0.170	0.030	0.028	0.015	0.243	0.001	0.244	-	0.265	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랩(W)	0.170	0.000	0.028	0.015	0.213	0.001	0.214	-	0.235	0.000
수수료후취-온 라인슈퍼(S)	0.170	0.110	0.028	0.015	0.323	0.001	0.324	-	0.345	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개인연금(Cp)	0.170	0.300	0.028	0.015	0.513	0.001	0.514	-	0.535	0.00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 (Cp-E)	0.170	0.150	0.028	0.015	0.363	0.001	0.364	-	0.385	0.000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 (S-P)	0.170	0.100	0.028	0.015	0.313	0.001	0.314	-	0.335	0.000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0.170	0.280	0.028	0.015	0.493	0.001	0.494	-	0.515	0.00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기관 (Cp2-F)	0.170	0.025	0.028	0.015	0.238	0.001	0.239	-	0.26	0.000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 (Cp2-E)	0.170	0.140	0.028	0.015	0.353	0.001	0.354	-	0.375	0.000
지급시기	매3개월 후급					사유 발생시	-	-	-	사유 발생시

- 주 1) 기타비용은 증권사의 예약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증권 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8.08 ~ 2025.08.07]
- 주 2)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주 3) 증권거래비용은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권거래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투자신탁에서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증권거래비용은 2,143 원입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8.08 ~ 2025.08.07]
* 증권거래비용에 포함되는 항목 : 주식·채권·수익증권·파생상품·기타 증권 등 자산매매수수료 등 (단, 세부지출내역은 펀드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 4) 합성 총보수·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보수·비용 차감후 기준)으로 나누어 산출한 것으로 직전 회계연도의 모투자신탁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였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8.08 ~ 2025.08.07]
- 주 5) 동종유형 총 보수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총 보수비용을 의미합니다. (2025.7.31. 기준)
- 주 6) 금융비용은 총보수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직전 회계연도에 금융비용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24.08.08~2025.08.07]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누적)

(단위:천원)

구분		1년후	2년후	3년후	5년후	10년후
수수료선취-오프라인(A)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9	117	167	273	584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72	121	174	285	610
수수료선취-온라인(A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82	119	198	433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48	86	126	210	459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C)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62	127	195	340	7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65	132	202	352	7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C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46	93	143	250	56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48	98	150	261	58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2	46	71	124	280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랩(W)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5	51	78	136	307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고액(I)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6	52	81	141	31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8	57	87	153	345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S)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4	70	107	187	421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36	74	114	199	448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4	110	169	295	66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56	115	176	307	688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8	78	120	210	47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40	83	127	222	499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S-P)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3	67	104	181	408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35	72	111	193	43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52	106	163	284	637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54	111	170	296	66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Cp2-F)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25	51	79	138	31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27	56	86	150	339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37	74	112	186	372
	판매수수료 및 보수·비용 (모투자신탁의 보수 포함)	39	79	118	197	394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하였을 경우 직·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보수·비용을 누계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 경우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판매수수료를 또는 총 보수·비용비율은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 등에 따라 실제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2) S 클래스는 투자자가 수익증권을 10년 동안 보유하는 것을 가정하여 후취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았습니다.

14. 이익 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

가. 이익 배분

- 1) 수익자는 투자신탁회계기간의 종료에 따라 발생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판매회사와의 별도의 약정에 따라 이익분배금에서 세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분배금 지급 일의 기준가격으로 수익증권을 매수하거나 현금으로 분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 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 및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 처리기준에 따른 매매이익에 해당하는 이익금은 분배를 유보하며, 이익금이 없는 경우에도 분배를 유보합니다.

※ 매년 결산·분배할 때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동안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 중 집합투자재산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은 분배되지 않고 보유기간 동안의 손익을 합산하여 환매할 때 해당 환매분에 대하여 과세됩니다(다만, 분배를 유보할 수 없는 이자·배당 소득 등은 매년 결산·분배되어 과세됩니다). 이 경우 환매연도에 과세된 보유기간 동안의 매매 및 평가 이익을 포함한 연간 금융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부담이 증가하여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2) 투자신탁계약기간의 종료 또는 투자신탁의 해지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

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환금 등의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환금 등을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투자신탁계약기간 종료일 현재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의 매각지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환금 등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이후에 지급할 수 있습니다.

- 3) 수익자가 상환금 등의 지급개시일로부터 5년간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권리를 상실하고 판매회사에게 귀속될 수 있습니다.
- 4) 신탁업자가 이익분배금 또는 상환금 등을 판매회사에게 인도한 후에는 판매회사가 수익자에 대하여 그 지급에 대한 책임을 부담합니다.

나. 과세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별도의 소득과세 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투자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귀속되는 시점에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이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하는 날 포함)에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으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은 범위를 한도로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text{환급세액} = \text{외국납부세액} \times \text{환급비율}^{1)}$$

주1) 환급비율: (사업연도 총소득-국내비과세소득)/(국외원천과세대상소득)

단, 환급비율>0 이면 1, 환급비율<0 이면 0으로 함.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하는 외국납부세액은 투자신탁 단계에서 별도의 환급 절차가 없으며, 원천징수의무자(판매회사)가 수익자에게 집합투자기구 이익을 지급하는 시점에 수익자가 납부할 세액에서 수익자별 외국납부세액 공제 금액을 차감하여 원천징수 합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취득세, 등록세,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수익자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특약에 따라 원본에 전입되는 날 및 신탁계약기간 연장되는 날 포함)에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되며,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실물양도의 방법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 동안 발생한 과세이익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증권(채권 및 외국집합투자증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을 분배하는 경우 당해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인 배당소득금액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 15.4%(지방소득세 포함)

거주자 개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지방소득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합계액(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득(부동산임대소득, 과세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4)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에 따른 연금저축계좌를 통해 동 투자신탁에 가입한 가입자의 경우 동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시점에 별도의 과세를 하지 않으며, 연금저축계좌에서 자금 인출시 연금소득(연금수령시), 기타소득 또는 퇴직소득(연금외수령시)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세하며, 관련 사항은 “연금저축계좌 설정 약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 사항]

구분	주요 내용									
납입요건	가입기간 5년 이상, 가목 및 나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가. 연 1,800만원(퇴직연금,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에 따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 기준 잔액을 한도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연금계좌로 납입한 금액(이하 “전환금액”) 중 납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연금계좌 납입액									
수령요건	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									
공제제도	<table><tr><th>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th><th>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th><th>세액공제율</th></tr><tr><td>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td><td>600만원</td><td>15%</td></tr><tr><td>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td><td>(900만원)</td><td>12%</td></tr></table> ※지방소득세 별도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 20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종합소득금액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세액공제율								
4.5천만원 이하 (5.5천만원 이하)	600만원	15%								
4.5천만원 초과 (5.5천만원 초과)	(900만원)	12%								
연금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나이에 따라 변경, 종합과세 가능) 단, 이연퇴직소득은 3.3% (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한도	1,500만원(공적연금소득 제외)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선택 가능 (단, 24.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적용 -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하는 연금소득 - 의료목적,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인출하는 연금소득									
연금외수령시 과세	기타소득세 16.5% (지방소득세 포함) 단,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									
해지가산세	없음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 사유	천재지변,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치료·요양 가입자가 사회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15일 이상 입원 치료 금융기관의 영업정지, 인·허가 취소, 해산결의, 파산선고									
부득이한 연금외 수령시 과세	연금소득세 5.5~3.3%(지방소득세 포함)									
연금계좌 승계	상속인(배우자)가 승계 가능									

※ 연금저축계좌 관련 세제는 소득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퇴직연금제도의 세제

투자신탁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원천 징수하지 않으며 투자자는 퇴직연금 수령시 관련세법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여 일반 투자신탁 투자 시와는 상이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① 과세이연: 투자신탁의 결산으로 인한 재투자시 재투자 수익에 대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고, 퇴직연금 수령 시 연금수령 방법에 따라 과세됩니다.
- ② 퇴직연금 수령 방법에 따른 과세체계: 연금인출, 연금외인출 등 연금의 인출방식에 따라 과세체계가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
- ③ 세액공제(2023. 1. 1. 부터):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600 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산하여 연 900 만원 한도로 12%(종합소득금액 4.5 천만원 이하 또는 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5 천만원 이하인 경우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 59 조의 3 제 1 항제 1 호 및 제 2 호 규정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퇴직연금종합안내(<http://pension.fss.or.kr>)의 '퇴직연금소개 → 과세제도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 및 각 수익자에 대한 과세는 정부 정책, 수익자의 세무상의 지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익자는 투자신탁에 대한 투자로 인한 세금 영향에 대하여 조세전문가와 협의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 3 부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1. 재무정보

본 집합투자기구의 재무정보에 관한 자료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회계기준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기 간	회계감사법인	감사의견
제 7 기 (22.08.08~23.08.07)	회계감사 미대상	해당사항 없음
제 8 기 (23.08.08~24.08.07)	회계감사 미대상	해당사항 없음
제 9 기 (24.08.08~25.08.07)	회계감사 미대상	해당사항 없음

가. 요약재무정보

(단위 : 원)

대차대조표			
항 목	제 9 기 (2025.08.07)	제 8 기 (2024.08.07)	제 7 기 (2023.08.07)
운용자산	5,453,788,616	5,403,010,996	5,969,394,497
유가증권	5,300,703,061	5,244,475,256	5,783,682,562
현금 및 예치금	153,085,555	120,505,740	136,161,935
기타 운용자산	0	38,030,000	49,550,000
기타자산	370,948,905	181,729,776	217,315,683
자산총계	5,824,737,521	5,584,740,772	6,186,710,180
기타부채	356,598,733	166,649,957	199,523,503
부채총계	356,598,733	166,649,957	199,523,503
원본	4,267,403,448	4,318,465,306	5,215,846,089
이익조정금	1,200,735,340	1,099,625,509	771,340,588
자본총계	5,468,138,788	5,418,090,815	5,987,186,677
손익계산서			
항 목	제 9 기 (24.08.08~25.08.07)	제 8 기 (23.08.08~24.08.07)	제 7 기 (22.08.08~23.08.07)
운용수익	276,024,047	652,234,947	83,923,936
이자수익	3,908,011	5,274,547	5,897,707
배당수익	207,317,397	154,921,655	170,963,782
매매/평가차익(손)	64,798,639	492,038,745	-92,937,553
운용비용	23,036,301	22,717,296	28,116,346
관련회사보수	22,937,045	22,600,096	27,961,695
매매수수료	1,746	14,100	20,501

기타비용	97,510	103,100	134,150
당기순이익	252,987,746	629,517,651	55,807,590

주1)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는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감사보고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2) 기타수익에는 증권대여에 따른 수수료 수익 등이 포함

주3) 기타비용에는 증권차입에 따른 수수료 비용 등이 포함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

(단위 : 백만원, %)

구분	당해 연도			전년도		
	거래금액(A)	거래비용		거래금액(A)	거래비용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금액(B)	거래비용 비율(B/A)
주식 이외의 증권(채권 등)	1,559	-	-	6,972	-	-
기타(레포, 대차, 콜 등)	3,348	0	0.00	42,723	0	0.00
합 계	4,907	0	0.00	49,690	0	0.00

주 1)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 포워드(장외파생상품)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

주 2)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의 경우 모투자신탁 내에서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식의 매매회전율〉

(단위 : 백만원, 주, %)

주식 매수		주식 매도		당해 보유 주식의 평균가액(B)	매매회전율 (A/B)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
수량	금액	수량	금액(A)			
-	-	-	-	-	-	-

주 1) 모투자신탁의 자투자신탁인의 경우 모투자신탁 내에서의 지분율을 반영하여 가중치를 안분하여 기재하였습니다.

주 2) 동종유형은 공모집합투자기구 및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 구분하여 법 제 229 조에 따른 5 가지 유형(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외)을 의미합니다.

주 3) 동종 유형 평균 매매회전율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공시하는 동종유형 집합투자기구 전체의 평균 매매회전율을 의미합니다.

나. 대차대조표

과 목	제9기	제8기	제7기
	(2025.08.07)	(2024.08.07)	(2023.08.07)
운용자산	5,453,788,616	5,403,010,996	5,969,394,497
현금및예치금	153,085,555	120,505,740	136,161,935
현금및현금성자산	153,085,555	120,505,740	136,161,935
대출채권	0	38,030,000	49,550,000
콜론	0	38,030,000	49,550,000
유가증권	5,300,703,061	5,244,475,256	5,783,682,562
수익증권	5,300,703,061	5,244,475,256	5,783,682,562
기타자산	370,948,905	181,729,776	217,315,683

매도유가증권미수금	163,570,536	26,735,328	46,267,338
미수이자	60,972	72,793	84,563
미수배당금	207,317,397	154,921,655	170,963,782
자 산 총 계	5,824,737,521	5,584,740,772	6,186,710,180
기타부채	356,598,733	166,649,957	199,523,503
해지미지급금	161,318,855	22,240,410	41,351,595
미지급운용수수료	2,562,040	2,331,269	2,718,487
미지급판매수수료	2,620,735	2,479,080	2,849,874
미지급수탁수수료	421,948	383,968	447,746
미지급사무수탁수수료	226,024	205,696	239,861
수수료미지급금	10,000	10,728	13,215
미지급이익분배금	189,439,131	138,998,806	151,902,725
부 채 총 계	356,598,733	166,649,957	199,523,503
1. 원 본	4,267,403,448	4,318,465,306	5,215,846,089
2. 이익잉여금	1,200,735,340	1,099,625,509	771,340,588
자 본 총 계	5,468,138,788	5,418,090,815	5,987,186,677
부 채 와 자 본 총 계	5,824,737,521	5,584,740,772	6,186,710,180
발행좌수	4,383,540,758	4,416,772,639	5,319,667,088
기준가격	1,243.83	1,223.24	1,122.12

가. 손익계산서

과 목	제9기	제8기	제7기
	(24.08.08-25.08.07)	(23.08.08-24.08.07)	(22.08.08-23.08.07)
	금 액	금 액	금 액
운 용 수 익(또는 운 용 손 실)	276,024,047	652,234,947	83,923,936
투자수익	211,225,408	160,196,202	176,861,489
이자수익	3,908,011	5,274,547	5,897,707
배당금수익	207,317,397	154,921,655	170,963,782
매매차익과 평가차익	82,167,049	492,053,020	124,821,925
지분증권매매차익	82,167,049	120,647,724	124,821,925
지분증권평가차익	0	371,405,296	0
매매차손과 평가차손	17,368,410	14,275	217,759,478
지분증권매매차손	4,182,793	14,275	84,023,313
지분증권평가차손	13,185,617	0	133,736,165

운 용 비 용	23,036,301	22,717,296	28,116,346
운용수수료	10,002,023	9,772,650	12,163,251
판매수수료	10,405,196	10,355,575	12,721,895
수탁수수료	1,647,345	1,609,596	2,003,343
사무수탁수수료	882,481	862,275	1,073,206
매매수수료	1,746	14,100	20,501
기타운용비용	97,510	103,100	134,150
당기순이익(또는 당기순손실)	252,987,746	629,517,651	55,807,590
좌당순이익(또는 좌당순손실)	54.50	129.48	8.97

2. 연도별 설정 및 환매 현황

가. 트러스트코리아외화채권증권투자신탁(UH) [채권]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6,594	7,428	4,666	5,476	6,097	7,018	5,320	6,145
2023.8.8-2024.8.7	5,320	5,969	1,753	2,055	2,813	3,290	4,417	5,562
2024.8.8-2025.8.7	4,417	5,403	2,020	2,605	2,184	2,780	4,384	5,663

나.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115	130	4	4	13	15	108	124
2023.8.8-2024.8.7	108	121	7	9	6	6	112	140
2024.8.8-2025.8.7	112	137	14	18	47	61	81	104

다. 수수료선취-온라인 (Ae)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39	40	57	61	51	55	47	49
2023.8.8-2024.8.7	47	48	33	35	58	62	22	26
2024.8.8-2025.8.7	22	25	27	32	30	35	20	24

라.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256	288	24	27	51	59	232	267
2023.8.8-2024.8.7	232	260	10	12	22	26	226	282
2024.8.8-2025.8.7	226	276	17	22	41	51	206	264

마.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2,161	2,425	1,407	1,636	1,795	2,076	1,810	2,075
2023.8.8-2024.8.7	1,810	2,023	397	464	1,041	1,215	1,207	1,509
2024.8.8-2025.8.7	1,207	1,471	315	402	564	713	985	1,262

바.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 (Cp)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386	430	28	32	222	255	199	226
2023.8.8-2024.8.7	199	221	10	11	35	40	179	222
2024.8.8-2025.8.7	179	216	16	20	92	115	107	136

사.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단위 : 백만원, 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22	24	46	56	47	55	22	25
2023.8.8-2024.8.7	22	24	2	2	7	8	17	21
2024.8.8-2025.8.7	17	21	1	1	1	2	17	21

아.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개인연금 (S-P)

[단위 : 백만원,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96	108	10	11	69	80	39	45
2023.8.8-2024.8.7	39	44	4	5	15	18	29	37
2024.8.8-2025.8.7	29	36	5	6	10	13	25	32

자.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퇴직연금 (Cp2)

[단위 : 백만원,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244	274	30	33	99	106	180	206
2023.8.8-2024.8.7	180	201	28	33	19	23	193	240
2024.8.8-2025.8.7	193	235	7	9	22	28	183	234

차. 수수료미징구-온라인-개인연금(Cp-E)

[단위 : 백만원,백만원]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286	340	168	208	196	235	265	321
2023.8.8-2024.8.7	265	313	35	44	39	49	267	354
2024.8.8-2025.8.7	267	345	36	48	55	72	255	346

카. 수수료미징구-온라인-퇴직연금(Cp2-E)

[단위 : 백만원,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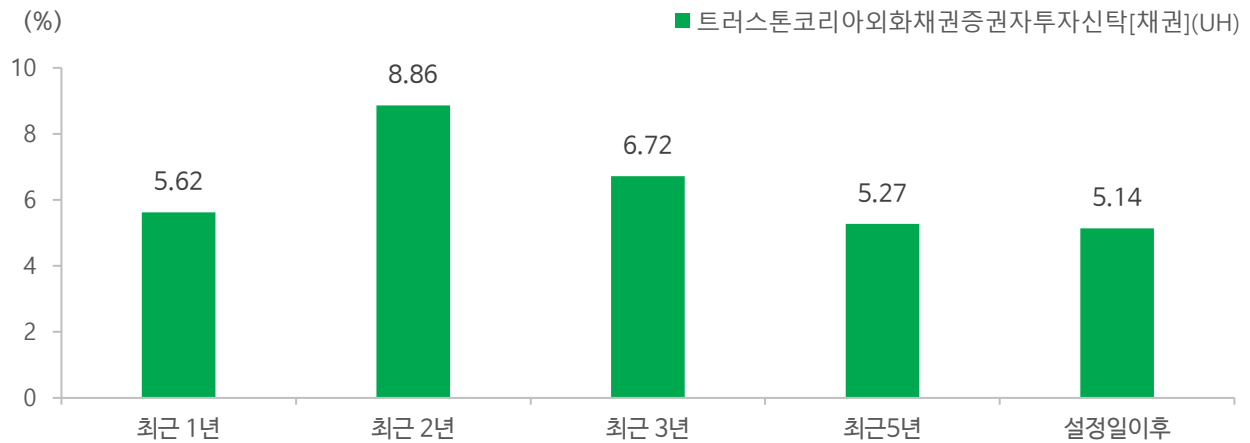
기간	기간초 잔고		회계기간 중				기간말 잔고	
			설정(발행)		환매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좌수 (출자 지분수)	금액
2022.8.8-2023.8.7	2,863	3,390	2,640	3,267	3,244	3,906	2,316	2,802
2023.8.8-2024.8.7	2,316	2,732	1,048	1,295	1,357	1,669	2,066	2,726
2024.8.8-2025.8.7	2,066	2,657	1,409	1,915	1,140	1,530	2,389	3,233

3.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다음의 투자실적은 이 투자신탁의 과거 성과를 나타낼 뿐 미래의 운용성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실적 추이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작성된 것으로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수익률을, 연도별 수익률은 기간별 수익률 변동성을 나타낸 것입니다.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증권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가.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기간	설정일	최근 1년	최근 2년	최근 3년	최근 5년	설정일 이후
		24.08.08 ~25.08.07	23.08.08 ~25.08.07	22.08.08 ~25.08.07	20.08.08 ~25.08.07	설정일 ~25.08.07
코리아외화채권(UH)	16.08.08	5.62	8.86	6.72	5.27	5.14
수익률변동성		6.99	6.23	8.17	7.49	6.98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16.08.08	5.17	8.40	6.26	4.82	4.68
수수료선취-온라인(Ae)	19.05.13	5.28	8.52	6.38	4.93	3.8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16.08.08	5.00	8.22	6.09	4.65	4.52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16.09.22	5.20	8.43	6.29	4.85	4.75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개인연금(Cp)	16.08.23	5.08	8.31	6.18	4.73	4.50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16.08.18	5.28	8.52	6.38	4.93	4.8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16.08.18	5.29	8.53	6.39	4.94	4.85
수수료미징구- 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16.09.21	5.10	8.33	6.20	4.75	4.65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개인연금(Cp-E)	18.01.29	5.24	8.47	6.34	4.89	6.34
수수료미징구- 온라인- 퇴직연금(Cp2-E)	18.02.28	5.25	8.48	6.35	4.90	6.39

- 주 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 주 2) 연평균 수익률은 해당 기간 동안의 누적수익률을 기하평균방식으로 계산한 것으로 해당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을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 주 3) 연평균수익률 그래프는 모든 종류 수익증권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투자신탁(전체)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이 경우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투자신탁에 부과되는 보수 등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주 4) 수익률 변동성(%)은 해당 기간동안 집합투자기구의 연환산된 주간수익률의 표준편차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나. 연도별 수익률 추이 (세전 기준)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24.08.08 ~25.08.07	23.08.08 ~24.08.07	22.08.08 ~23.08.07	21.08.08 ~22.08.07	20.08.08 ~21.08.07
코리아외화채권(UH)	5.62	12.23	2.56	9.20	-2.61
수수료선취-오프라인 (A)	5.17	11.75	2.12	8.74	-3.04
수수료선취-온라인(Ae)	5.28	11.87	2.23	8.85	-2.93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C)	5.00	11.57	1.95	8.56	-3.1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Ce)	5.20	11.78	2.14	8.77	-3.01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개인연금 (Cp)	5.08	11.66	2.03	8.65	-3.12
수수료후취-온라인슈퍼 (S)	5.28	11.87	2.23	8.85	-2.93
수수료미징구-온라인슈퍼- 개인연금(S-P)	5.29	11.88	2.24	8.87	-2.92
수수료미징구-오프라인- 퇴직연금 (Cp2)	5.10	11.68	2.05	8.67	-3.09
수수료미징구-온라인- 개인연금(Cp-E)	5.24	11.83	2.19	8.81	-2.97

수수료미징구-온라인-	5.25	11.84	2.20	8.82	-2.96
퇴직연금(Cp2-E)					

주 1) 비교지수 : 이 투자신탁은 투자전략의 특성상 비교 가능한 지수가 없어, 비교지수를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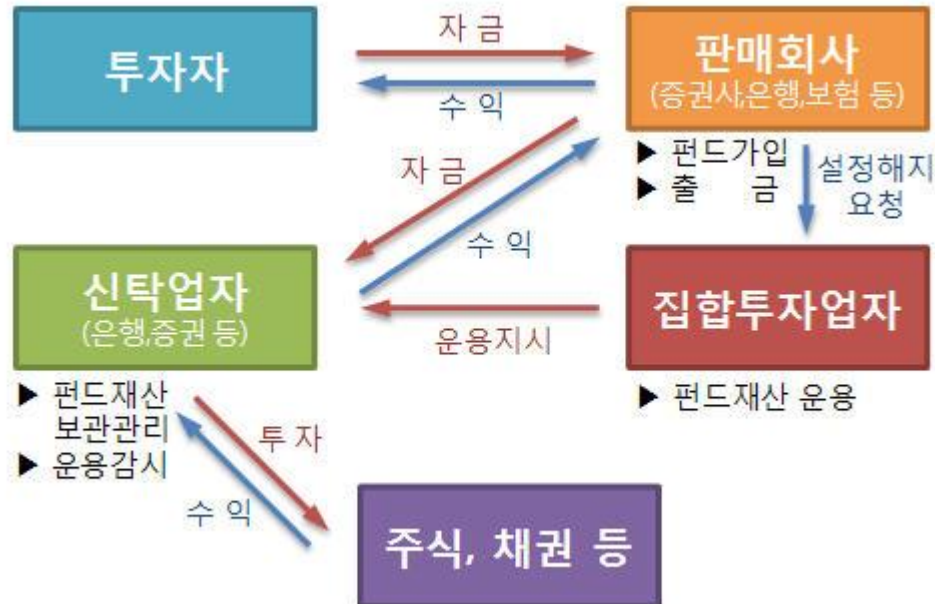
다. 집합투자기구의 자산 구성 현황

- 트러스톤 코리아외화채권 증권모투자신탁 [채권]

[2025.06.30. 현재/단위:백만원, %]

통화별구분	채권		장내파생상품		단기대출및예금		자산총액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평가액	비중
미국	5,344	92.47	9	0.16	2426	7.37	5,779	95.23
대한민국	-	-	-	-	278	100.00	278	4.58
자산합계	5,344	88.06	21	0.34	704	11.60	6,069	100.00

제4부 집합투자기구 관련회사에 관한 사항



1.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가. 회사 개요

회 사 명	트러스트자산운용(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특별시 성동구 독성로 1 길 10(성수동 1 가) (☎ 6308-0500)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trustonasset.com
자본금	137.75억원
이해관계인 (2025.7.31. 기준)	이해관계 신탁업자(30% 이상) : 농협은행(61.70%)
회사연혁	1998.04 IMM투자자문(주) 설립 2008.06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의한 자산운용회사로 전환 트러스트자산운용(주)로 사명 변경 2022.11 종합자산운용사로 전환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집합투자기구의 설정·해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운용지시 등의 업무 수행

(2) 집합투자업자의 의무와 책임

- ① 선관의무 :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집합투자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익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 ② 책임 :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관련 법령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3) 업무위탁

- ① 기준가격계산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합니다.
 - 일반사무관리회사는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을 매일 산정하여 집합투자업자에 통보하여야 하며, 집합투자업자는 산정된 기준가격을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영업소 및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 기준가격계산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해서는 집합투자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재산에서 보수를 지급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② 수익자명부 작성업무의 위탁
 -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명부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업무를 수탁 받은 전자등록기관이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집합투자업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단위:백만원)

구분	제27기 (2024.12.31)	제26기 (2023.12.31)
1. 현금및예치금	15,050	14,610
2. 유가증권	61,835	54,051
3. 대출채권	1,685	1,580
4. 유형자산	15,604	11,847
5. 투자부동산	9,560	9,712
6. 기타자산	12,681	10,290
자산총계	116,415	102,090
1. 차입부채	5,000	5,000
2. 기타부채	9,781	6,326
부채총계	14,781	11,326
1. 자본금	13,775	13,775
2. 자본잉여금	11,408	11,408
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1,392	-984

4. 이익잉여금	102,409	91,131
5. 기타자본항목	-24,566	-24,566
자본총계	101,634	90,764
부채 및 자본총계	116,415	102,090
영업수익	46,114	31,076
영업이익	16,581	3,326
당기순이익	13,228	4,123

주)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한 별도재무제표기준 실적임

라. 운용자산 규모

(2025.7.31. 현재/단위:억원)

구분	증 권					기타 ^{주)}	총계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	파생형	재간접형		
수탁고	103,623	8,859	4,583	885	1,261	46,253	165,464

※ 일임 및 자문 포함

주)기타 : 특별자산 및 부동산

2. 운용관련 업무 수탁회사 등에 관한 사항

가. 집합투자재산의 운용(지시)업무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나. 기타 업무의 수탁회사 : 해당사항 없음

3. 집합투자재산 관리회사에 관한 사항(신탁업자)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주)우리은행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소공로 51(회현동 1가) (1588-5000)
인터넷 홈페이지주소	www.wooribank.com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에 따른 자산의 취득 및 처분의 이행, 해지대금 및 이익금의 지급
- 집합투자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수익금·임대료 등의 수령 등
- 집합투자업자의 집합투자재산 운용지시에 대한 감시업무, 투자신탁재산 평가의 공정성 및 기준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투자신탁재산 명세서와 신탁업자가 보관·관리 중인 집합투자재산의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등의 확인업무

(2) 신탁업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의무

- 신탁업자는 투자자를 위하여 법령, 집합투자계약, 투자설명서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그 사항을 확인하고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당해 운용지시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 신탁업자의 확인사항

: 투자설명서가 법령·집합투자계약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 자산운용보고서의 작성이 적정한지 여부 / 집합투자재산의 평가가 공정한지의 여부 / 기준가격 산정이 적정한지의 여부 / 시정요구 등에 대한 집합투자업자의 이행내역 /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② 책임 : 신탁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계약 또는 투자설명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신탁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 위원을 포함)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합투자업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③ 연대책임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및 채권평가회사는 법령에 의하여 투자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4.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하나펀드서비스(주)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10층 (02-6714-4600)
회사연혁	2003.04.01 설립

나. 주요업무

(1) 주요업무

기준가격 계산에 관한 업무 및 보수인출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2)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의무

기준가격 계산의 오류 및 집합투자업자와 맺은 계약의 불이행 등으로 인해 수익자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채권평가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개요

회사명	주소
KIS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6길 38 한국화재보험협회 4층
한국자산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88 삼환빌딩
나이스채권평가주식회사	서울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주식회사에프엔가이드	서울시 강서구 마곡중앙2로 61

나. 주요업무

채권시가평가 정보 제공, 채권 관련 자료 및 분석도구 제공,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채권 등 투자증권 및 파생상품의 가격을 평가하고 이를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제5부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1. 투자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가. 수익자총회 등

(1) 수익자총회의 구성

투자신탁에는 전체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 총회를 두며, 수익자총회는 법령 또는 신탁계약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서만 결의할 수 있습니다.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2) 수익자총회의 소집 및 의결권 행사방법

- ① 수익자총회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소집합니다. 다만,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보유한 수익자가 수익자총회의 목적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수익자총회의 소집을 집합투자업자에 요청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1개월 이내에 수익자총회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익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신탁업자 또는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한 수익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② 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4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 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5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 ③ 수익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서면에 의결권행사의 내용을 기재하여 수익자총회일 전날까지 집합투자업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에 출석한 수익자가 소유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결의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의결권을 행사(이하 "간주의결권행사"라 한다.)한 것으로 봅니다.
 1. 수익자에게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의결권 행사에 관한 통지가 있었으나 의결권이 행사되지 아니하였을 것
 2. 간주의결권행사의 방법이 신탁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을 것
 3. 수익자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한 수익증권의 총좌수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일 것
 4.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②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그 날부터 2주 이내에 연기된 수익자총회(이하 "연기수익자총회"라 한다.)를 소집하여야 합니다.
- ⑤ 연기수익자총회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 총좌수의 8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합니다. 다만, 법에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외에 신탁계약으로 정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에 대하여는 출석한 수익자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10분의 1 이상의 수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3) 수익자총회 결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적은 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등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신탁을 합병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신탁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투자신탁계약기간의 변경 (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집합투자업자 변경 / 환매금지형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그 밖에 수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사유로 수익자가 소집을 요청한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변경될 경우 수익자는 해당 변경으로 인해 초래되는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의 손실 등을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에게 보상하여야 함
 1.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법령·신탁계약에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경우
 2.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3.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업자의 변경에 동의하거나, 신탁업자가 신탁업자의 변경에 동의한 경우
- 위의 사항에 따른 손실 등의 보상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 결의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함
 1. 대상금액 : 해당 투자신탁 보수율에 수익자총회 결의일 익영업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과 제2호의 대상기간 일수를 곱한 금액 및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가 투자신탁 설정과 관련하여 지급한 부대비용(자문료, 시스템개발비 등)을 포함
 2. 대상기간 : 변경 시행일로부터 1년간. 단, 신탁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시행일로부터 신탁계약기간 종료일까지로 함
- 집합투자업자나 신탁업자는 위의 보상 등 과는 별도로 손해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를 상대로(법제190조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가 수익자총회를 요청하는 경우는 수익자 및 신탁업자로 한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4) 반대매수청구권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에게 수익증권의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법 제18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신탁계약의 변경 또는 제193조제2항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대한 수익자총회의 결의에 반대(수익자총회 전에 해당 집합투자업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수익자가 그 수익자총회의 결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 ② 법 제19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투자신탁의 합병에 반대하는 수익자가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나. 잔여재산분배

- (1)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기간이 종료 등의 사유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 지체없이 수탁회사로 하여금 투자신탁원본의 상환금 및 이익금(이하 “상환금등”이라 한다)을 판매회사를 경유하여 수익자에게 지급하며, 판매회사는 신탁업자로부터 인도받은 상환금등을 지체 없이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신탁재산인 자산으로 수익자에게 상환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장부·서류의 열람 및 등·초본 교부청구권

- (1) 수익자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에 한하며,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를 포함합니다.)에 대하여 영업시간 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해 수익자에 관련된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장부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 (2) 수익자가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는 장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집합투자재산명세서
 - ② 집합투자증권기준가격대장
 - ③ 재무제표 및 그 부속명세서
 - ④ 집합투자재산 운용내역서
- (3)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규약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라. 손해배상책임

- (1) 집합투자업자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 포함)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수익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집합투자업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2) 집합투자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관련되는 이사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합니다)에게도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들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 (3)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이 법에 의하여 수익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때에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집니다.
- (4) 증권신고서(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포함)와 투자설명서(예비투자설명서 및 간이투자설명서를 포함)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수익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해당 주체는 그 손해에 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배상의 책임을 질 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그 증권의 취득자가 취득의 청약을 할 때에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① 해당 증권신고서의 신고인과 신고 당시의 발행인의 이사
 - ② 해당 증권신고서의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 ③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가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④ 해당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또는 그 첨부서류에 자기의 평가·분석·확인 의견이 기재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고 그 기재내용을 확인한 자
 - ⑤ 해당 증권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법시행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 ⑥ 해당 투자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교부한 자
 - ⑦ 매출의 방법에 의한 경우 매출신고 당시의 매출인

마. 재판관할

- (1)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또는 판매회사가 이 집합투자계약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한 때에는 소송을 제기하는 자의 본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 (2) 수익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때에는 수익자의 선택에 따라 수익자의 주소지 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익자가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수익자가 거래하는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의 영업점포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바. 기타 투자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 (1)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계약 등 상품에 대한 추가정보를 원하시는 고객은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2)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 변동 등 운용실적에 관해서는 이 상품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판매회사에 언제든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 (3) 이 상품의 투자설명서 및 기준가변동 등은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람, 복사하거나, 금융투자협회 인터넷(www.kofi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에 관한 사항

가. 의무해지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1) 신탁계약에서 정한 신탁계약기간의 종료
- (2) 수익자총회의 투자신탁 해지 결의
- (3) 투자신탁의 피흡수합병
- (4) 투자신탁의 등록 취소
- (5)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다만,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나. 임의해지

- (1) 집합투자업자는 아래의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①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 ② 해당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 ③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한 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④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 (2) 집합투자업자는(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해지, 합병 및 모자형전환, 존속 등 처리계획을 신탁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 (3) (1)의 ③ 및 ④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판매회사에 통지하거나 집합투자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 (4) 이 투자신탁을 설정한 후 6개월이 되는 날에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 원본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모투자신탁은 「트러스트 중장기 증권모투자신탁[채권]」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집합투자기구의 공시에 관한 사항

가. 정기보고서

(1) 영업보고서 및 결산서류 제출 등

① 영업보고서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매 분기의 영업보고서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의 서류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이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투자신탁의 설정현황 또는 투자익명조합의 출자금 변동 상황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현황과 집합투자증권 기준가격표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한 의결권의 행사내용 및 그 사유(의결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합니다)이 기재된 서류
-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 중 주식의 매매회전율과 자산의 위탁매매에 따른 투자중개업자별 거래금액·수수료와 그 비중

② 결산서류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 등은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류를 금융위원회 및 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회계기간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계약기간 또는 존속기간의 종료
-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또는 해산

③ 회계감사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대하여 회계기간 말일 및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회계감사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을 기준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를 받지 않습니다.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
-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이 3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인 경우로서 회계기간 말일과 집합투자기구의 해지일 이전 6개월간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자산운용보고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확인을

받아 3개월마다 1회 이상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자산운용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에 따라 공시하는 것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집합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자산운용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회계기간의 개시일부터 3개월이 종료되는 날, 회계기간의 말일, 계약기간의 종료일 또는 존속기간의 만료일, 해지일 또는 해산일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 현재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자산·부채 및 집합투자증권의 기준가격
- 직전의 기준일(직전의 기준일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최초 설정일 또는 설립일을 말한다)부터 해당 기준일까지의 기간 중 운용경과의 개요 및 해당 운용기간 중의 손익 사항
- 기준일 현재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자산의 종류별 평가액과 집합투자재산 총액에 대한 각각의 비율
- 해당 운용기간 중 매매한 주식의 총수, 매매금액 및 매매회전율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투자자가 자산운용보고서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서면, 전화·전신·모사전송, 전자우편 및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매월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집합투자업자가 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를 설정 또는 설립하여 운용하는 경우로서 3개월마다 1회 이상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자산운용보고서를 공시하는 경우
- 투자자가 소유하고 있는 집합투자증권의 평가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집합투자계약에 자산운용보고서를 제공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경우

(3) 자산보관·관리보고서

①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관하여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작성하여 투자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전자등록기관을 통하여 기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직접, 전자우편 또는 이와 비슷한 전자통신의 방법으로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투자자에게 전자우편 주소가 없는 등의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 및 한국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와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갈음 할 수 있으며, 투자자가 우편으로 우편발송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② 투자자가 수시로 변동되는 등 투자자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자산보관·관리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계약의 주요 변경사항
- 투자운용인력의 변경
-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4) 기타장부 및 서류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판매회사 및 일반사무관리회사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에 관한 장부 및 서류를 작성하여 본점 및 지점에 비치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나. 수시공시

(1) 신탁계약변경에 관한 공시

①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신탁계약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은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총회의 소집통지를 전자등록기관에 위탁하여야 합니다.

-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등이 받는 보수 또는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
- 신탁업자의 변경
-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
- 투자신탁종류의 변경
-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
-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투자한도의 변경(법령 제80조제1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투자행위로 인한 경우만 해당)
- 환매금지투자신탁으로의 변경
- 집합투자업자의 변경
- 환매대금 지급일의 연장
- ② 집합투자업자는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합니다.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및 모든 수익자에게 통지
 - 수익자총회의 의결에 의하지 않고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공시

(2) 수시공시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 투자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공시 그리고 집합투자업자·판매회사의 본·지점, 그 밖의 영업소 게시 및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 ①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 그 사실과 변경된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경력(운용한 집합투자기구의 명칭, 집합투자재산의 규모와 수익률)
- ② 환매연기 또는 환매재개의 결정 및 그 사유(법 제230조에 따른 환매금지형 집합투자기구의 만기를 변경하거나 만기상환을 거부하는 결정 및 그 사유를 포함한다)
-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실자산이 발생한 경우 그 명세 및 상각률
- ④ 집합투자자총회의 결의내용
- ⑤ 투자설명서 변경(단, 법 및 영의 개정 또는 금융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투자운용인력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서 법제123조제3항제2호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변경하는 경우는 제외)
- ⑥ 집합투자업자의 합병, 분할, 분할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
- ⑦ 집합투자업자 또는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을 잘못 산정하여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⑧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설정 이후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⑨ 투자신탁이 설정되고 1년(법 시행령 제81조제3항제1호의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설정 이후 2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그 사실과 해당 투자신탁이 법 제19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 ⑩ 그 밖에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3)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공시

- ①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인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권행사내용 등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 법 제8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요의결사항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의결권공시대상법인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의결권의 구체적인 행사내용 및 그 사유
- ② 의결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주주총회일부터 5일 이내에 증권시장을 통하여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해야 합니다.

4. 이해관계인등과의 거래에 관한 사항

가. 이해관계인과의 거래내역 : 해당사항 없음

나. 집합투자기구간 거래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다. 투자중개업자 선정 기준

투자증권 및 장내파생상품 거래

(1) 평가 항목

리서치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 세미나개최, 기업탐방 등 정량적 부문과 신뢰도, 성실성 등 정성적 부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2) 선정방법

평가방법을 Manager, Analyst, Trader 등 중개사와 업무적으로 관련 있는 담당자들이 분기 1회 이상 배점 방식에 의해 평가항목별 점수를 평가하여 중개회사를 선정합니다.

5. 외국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추가 기재사항

해당사항 없음

[붙임] 용어풀이

용 어	내 용
금융투자상품	이익 추구 혹은 손실 회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재산적 가치를 지닌 금융 상품으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이 이에 속합니다.
집합투자	2 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금융 투자 상품 등에 투자하여 그 운용 성과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펀드	집합투자를 수행하는 기구로서 법적으로 집합투자기구라 표현되며 통상 펀드라고 불립니다. 대표적으로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이에 해당합니다.
투자신탁	집합투자업자와 수탁회사간 신탁계약 체결에 의해 만들어지는 펀드를 말합니다.
수익증권	펀드(투자신탁)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나눠주는 증권으로서 주식회사의 주권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순자산	펀드의 운용 성과 및 투자원금을 합한 금액으로서 원으로 표시됩니다.
증권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40% 이상을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를 말합니다
개방형	환매가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추가형	추가로 자금 납입이 가능한 펀드를 말합니다.
모자형	운용하는 펀드(모펀드)와 이 펀드에만 투자하는 펀드(자펀드)로 구성된 펀드 형태를 말합니다. 자펀드는 모펀드 외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종류형	멀티클래스 펀드로서 자금납입방법, 투자자격, 투자금액 등에 따라 판매보수 및 수수료를 달리 적용하는 펀드입니다.
기준가격	펀드의 가격으로서 매일매일 운용성과에 따라 변경되며 매입 혹은 환매시 적용됩니다.
자본이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시세 차익을 말합니다.
배당소득	펀드 운용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금을 말합니다.
보수	펀드에 가입 후 펀드 운용 및 관리에 대해 고객이 지불하는 비용입니다.
환매수수료	펀드를 일정 기간 가입하지 않고 환매할 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비용으로 그 비용은 펀드에 귀속됩니다.
설정	펀드에 자금이 납입되는 것을 지칭합니다.
해지	펀드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투자회사의 해산과 유사한 개념입니다.
투자자총회	집합투자계약상의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 펀드의 모든 가입자들이 모여서 의사 결정하는 기구. 그 방법 및 절차는 법령 및 해당 규약에 따릅니다.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금융투자협회가 투자자들이 쉽게 공시사항을 조회, 활용할 수 있도록 펀드에 부여하는 5 자리의 고유 코드를 말합니다.
원천징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 그 지급자(보통은 판매회사)가 그 지급받는 자(투자자)가 부담할 세액을 미리 국가를 대신하여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비교지수	벤치마크로 불리기도 하며 펀드 성과의 비교를 위해 정해놓은 지수입니다.
레버리지효과	차입 등의 방법으로 투자원본보다 더 많이 투자함으로써 투자성과의 크기를 극대화하는 효과를 말합니다. 상승하면 원본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수익이 더 크지만 하락하면 오히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신주인수권부 사채	주식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미리 약정된 가격에 따라 일정한 수의 신주 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입니다.
자산유동화증권	자산유동화증권이란 자산을 담보로 발행된 채권을 말합니다.
전환사채	사채로 발행되나 일정 기간 이후에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는 사채를 말합니다.
주식워런트	주식워런트는 특정 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사고 팔 수 있는 권리증서로 주식옵션과 유사합니다.